

공사 입찰공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o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공사)개요

가. 입찰건명 : 서귀포시 온평항 어촌뉴딜사업 온평나들길 추가조성공사
나. 공사위치 : 서귀포시 온평항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함
라. 공사내용 : 공사설계서 참조
마. 공사추정금액 : 87,300,000원
【(추정가격) 79,363,637원 + (부가가치세) 7,936,363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원

바. 공사기초금액 : 87,300,000원(부가세 포함)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가격(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조경공사업	79,363,637원(100%)	87,300,000원(100%)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용: **조경공사업 100%**
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72,384,920원
차. **A값: 1,200,488원**

구분	금액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161,049원	
국민연금보험료	212,79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161원	
퇴직공제부금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05,487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합계	1,200,488원	*A값

카. 공사구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카-1 본 사업은 복합공사로써,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제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사표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긴급) 제2호에 따라 5일 이상 공개를 실시하는 긴급입찰 공고입니다.
※ 긴급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착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령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령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령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령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가-2. 시공경험 평가는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평가요소로 평가합니다.

가-3.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 입찰(공사)개요]**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가-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가-5.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나. **지역제한(제주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령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령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령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령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청령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령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령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령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아.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아-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아-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자.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자-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자-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차.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차-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차-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카.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개찰장소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입찰서 제출(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
2026. 07. 15. 10:00	2026. 07. 20. 10:00	2026. 07. 20. 11:00	공단 계약담당PC

-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 참가방법

- 가.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가-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3. 대표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나-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 나-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명-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설계서 자료 열람을 필히 하시기 바라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열람장소 :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사**

7. 입찰참가등록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입찰참가등록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공단 귀속은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입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등록)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 나. 전문건설업 중 「「건설산업기본법」의 종합공사를 시행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된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소재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전적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천(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2-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나-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나-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나-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가.”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인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인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인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어서는 아니 됩니다.
- 가-1. 금품·향음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공사)**를 반드시 숙지 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공사)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별표 1]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별표 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공익침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89	온라인, 우편방문 등	청렴포털 [신고]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채널 (케이취슬)	02-6098-0865	온라인, 우편방문 등	익명신고채널 [신고]
부패부조리			02-6098-0866		
갑질피해			02-6098-0868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서의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에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서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 바. 하자보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하자보수보증금율은 3%를 적용합니다.**
- 사.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아.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 자. 본 공사 입찰공고서 붙임5에 첨부되어 있는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착공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 보증정보 제공처
- 공사 관련 사항 - 제주시(담당: 문은총, ☎ 064-727-0269)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제무회계실(담당: 조용희, ☎ 02-6098-0733)
-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빌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물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귀하



【붙임 3】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30	
B. 위험성평가	15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40	
D. 건강진단	5	
E. 산업재해	1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1. 관리감독자 선임	수급업체의 현장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 여부	10	
2. 관리감독자 자격	현장 관리감독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관련 자격	10	
3. 산재보험가입	수급업체 배치 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 여부	10	
B. 위험성평가	소계		
4.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5. 유해위험요인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5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7. 보호구지급계획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10	
8. 현장점검계획	현장 순회점검, 자재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10	
9. 위험작업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10. 비상상황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D. 건강진단			
11. 건강진단	참여인력의 건강진단 증명 여부	5	
E. 산업재해			
12.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 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배치(가점 10점)			
※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10점)			
총점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등급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등급 분류

등 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A	75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역량을 갖춘
B	6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5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50점 미만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수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관리감독자 선임

※ 필수항목으로 “미흡” 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적합	미흡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 여부	10	0

① 적합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계 포함

② 미흡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미선임

*중방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계 및 인적사항

2. 관리감독자 자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련 자격	10	6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수료

- 도급사업의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관련 자격 여부(경력 3년이상 또는 자격증) 보유

② 보통

-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련 자격이 1개만 충족할 경우

③ 미흡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안전보건교육 미수료 및 관련자격 사항 없음

*증빙 : 정기안전보건교육(전년도) 수료증,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3. 산재보험가입

※ 필수항목으로 “미흡” 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적합	미흡
수급업체의 산재보험가입 여부	10	0

① 적합 : 수급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② 미흡 : 수급업체가 산재보험에 미가입

*증빙 : 산재보험가입증명서

B. 위험성평가

4. 위험성평가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5. 유해위험요인

구 분	우수	미흡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5	0

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였음

② 보통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계획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교육 부분

7. 보호구지급계획

구 분	적합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10	0

① 적합 : 보호구 관련 대상, 수량, 지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됨

② 미흡 : 보호구 관련 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호구지급계획 부분

8. 현장점검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10	6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실시 주기 등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이 미흡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적합

③ 미흡: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점검계획

9. 위험작업

구 분	적합	미흡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회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0

① 적합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수립함

- 주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별도 취급절차를 수립함

③ 미흡: 위험작업, 위험물질에 대한 별도 절차를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위험작업 부분

10. 비상상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유관기관 연락체계가 포함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체계

D. 건강진단

11. 건강진단 현황

구 분	적합	미흡
참여인력의 건강진단 증빙 여부	5	0

① 적합 : 참여인력의 건강진단(전년도) 이행 여부

② 미흡 : 참여인력의 건강진단(전년도) 확인 불가

*증빙 : 건강진단결과표

E. 산업재해

12.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6	2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를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를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를 이상임

*증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를 확인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선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후 평가



【붙임 4】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사항	-
1. 관리감독자 선임	
2. 관리감독자 자격	
3. 산재보험 가입	
B. 위험성평가	-
4. 위험성평가 계획	
5. 유해위험요인 확인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7. 보호구지급계획	
8. 현장점검계획	
9. 위험작업	
10. 비상상황	
D. 건강진단	-
11. 건강진단 증빙	
E. 산업재해	-
12. 산업재해현황	
점수 총계	

*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증빙은 공고서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점검자 : 000000000 홍길동(인)



【붙임 5】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_____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신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_____ 대표자 : _____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 하